

제 35870호



치과의사 면허증



1. 성명 : 이 선 아

2. 생년월일 : 1995년 4월 4일

3. 근거 : 『의료법』 제5조

『의료법 시행령』 제8조에 따라 위와
같이 면허합니다.

2023년 2월 28일

보건복지부장관

